

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

[시행 2023.09.27]
(일부개정) 2023.09.27 조례 제1976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보건행정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88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진료수가) 진료수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.

제3조(진료비 감면) ①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
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
 3. 「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3.9.27]

제4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제3조에서 이동 2023.9.27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8. 9.22 조례 제22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12.23 조례 제1003호) (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12.23 조례 제1339호) (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9.27. 조례 제1976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